## 2021년도 제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 회의 개요

- o 일 시: 2021. 3. 3.(수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선임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12건(안건번호 제2021-21574 호~22038호)
- 회의결과: 순번 1번(안건번호 제2021-21574호)은 네이버 블로거가 대중가요 MR 음원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전송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공정 이용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원회 회부함. 순번 2번~4번(안건번호 제2021-21575호~제2021-21577호)은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TV에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드라마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순번 5번~18번(안건번호 제2021-21578호~21591호)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8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206건(안건번호 제2021-814호~1019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0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06개 안건, 저 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3개 안건(43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 복)}모두 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0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2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선임: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7쪽의 게시물 본문 내용, 밴드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 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C, B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선임: 금일 심의안건은 3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1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 해당 샘플 음원을 영상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시하고 있음. (스트리밍을 재생하면서)해당 영상을 재생할 경우, 규칙적으로 "☆☆☆☆"이라는 음성이 음원과 함께 재생되어 나옴. 해당 스트리밍 파일만으로 음원 사용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B 위원: 드라마 '☆☆☆☆ ☆☆☆'의 OST '☆☆☆'의 MR 음원인 지?

- 강나래 선임: 그러함. 배우 '☆☆☆'이 부른 '☆☆☆' 버전임.
- B 위원: 본 위원은 "☆☆ ☆☆"이라는 음성이 들리지 아니함. 다시 재생바람.
- 강나래 선임: (다시 스트리밍하면서)"☆☆ ☆☆"이라는 음성이 매우 작게 삽입되었음. 본 안건 검토 시, 해당 샘플 음원을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 ☆☆"이라는 여성 음성이 MR 음원과 함께 반복적으로 재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당 스트리밍으로는 축가 등 가 창의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게시자인 '☆☆☆' 로부터 해당 MR 음원을 별도로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C 위원: "☆☆ ☆☆"이라는 음성이 작게나마 들리는 것으로 보여짐.
- B 위원: 해당 스트리밍의 분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강나래 선임: 영상 스트리밍을 통하여 해당 음원을 4분 6초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4분이 넘는다는 것은 한 곡 전체분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짐.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다면, "☆☆ ☆☆"이라는 음성이 삽입되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봐야 하는 건 아닌지?
- C 위원: MR 음원 파일을 이용하는 목적은 해당 음원을 반주로하고 본인이 노래를 직접 부르기 위함임. 그러나 해당 스트리밍에서 제공

하고 있는 샘플 MR 음원은 "☆☆ ☆☆"이라는 음성이 삽입되어 있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짐.

### - 강나래 선임: 그러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인 대중가요 '☆☆☆'를 축가용 MR 음원으로 제작한 2차적저작물로 판단됨. 타인의 저작재산권에 속하는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이용권을 가지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이용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 및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저작물 판매 현황을 보여주면서)대중가요 '☆☆☆'의 MR 음원은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거나 한 곡당 770원을 지불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이용이 가능함.

온라인보호부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 1팀에 문의한 결과 게시자는 해당 MR 음원에 대하여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심의대상 게시물과 스트리밍 사이트의 음원은 대상이 되는 원저작물과 MR이라는 형식만 동일한 다른 음원임.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다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에게 반복하여 동일 저작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는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이용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하지 하나하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과 댓글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게시자가 게시물 본문에서 "☆☆☆ ☆☆☆☆ ☆☆ ☆☆"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제시하고 있는 점, 게시물 하단 블로그배너에 "☆☆ ☆☆☆☆☆"을 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2021.

2. 25. 기준 "☆☆ ☆☆ ☆☆☆☆ ☆☆☆ ☆☆☆ ☆☆☆ ☆☆☆☆☆☆☆☆☆☆☆ 등의 구매 문의 댓글이 173건 달려 있는 점, (민원인이 제출한 '게시자-민원인'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하면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이 제출한 게시자와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코러스버전 원키 MR 음원을 2만 원에, 한 키를 내린 MR 음원을 3만 원에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자는 직접 제작 및 편집한 MR 음원을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다수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C 위원: MR 음원 제작할 경우, 멜론 같은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 로드 받아서 가수의 목소리만 제거하고 MR 음원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다르게 해당 안건의 경우, 게시자가 직접 MR 음원을 제작한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부분은 다른 MR 음원 제작 과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런 의미에서 해당 MR 음원이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강나래 선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대중가요의 MR 음원을 전송의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려는 목적의 게시물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고,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對審制)가 아닌 관계로 당사자 의견 청취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음.

또한, MR 음원과 원저작물의 이용목적은 상이하여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고, 합법시장의 MR 음원은 770원에 제공되고 있는 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2만 원에서 3만 원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과 MR 음원의 수요자인 가창자들은 여러 가지 MR 음원 중 자신의 사용목적 및 취향에 맞는 MR 음원을 선택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새로운 MR 음원이 등장한다고하여도 MR 음원의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컨대,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게시자의 권리 여부를 대심제로 진행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심의대상 게시물이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수, 비고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본 위원은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정 부분 동의함. 현재 법원 판례는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 였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음.
  -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 이용 측면에서의 4가지 요소에 해당되는지함께 검토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본 위원은 반대 의견임. 우선, 해당 검토보고서는 대중가요 '☆☆☆'를 맞춤형으로 MR 음원을 제작하여 판매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짐. 그로 인하여 영상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는 샘플 MR 음원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음. 단순히 샘플 MR 음원이라는 이유로 검토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샘플 MR 음원이 저품질이기 때문에 MR 음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저작권 침해가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나, 본 위원은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는 샘플 MR 음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는 샘플 MR 음원은 음악저작물의 작곡부분을 활용하여 새로 제작된 독자적인 음원이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MR 음원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 저품질의 샘플 음원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에

는 동의하기 어려움.

- 오진해 전문위원: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되는 샘플 MR 음원은 제 작자가 실연한 음원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임.
- B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다름. 게시자가 새로운 MR 음원을 제작한 것임. 예를 들어, 음반제작자가 음원을 제작하고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음반제작자로서 별도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음원제작 자체에 있어서 복제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사안의 경우 게시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MR 음원을 제작한 것으로 작곡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임.
- C 위원: 본 사안이 형식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함. 다만 저작권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검토보고서에서는 해당 MR 음원이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렇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음.
- B 위원: 본 사안은 원저작물의 작곡 저작권을 사용하여 새로운 MR 음원을 제작한 것으로 기존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타 MR 음원의 저작권과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문제가 되는 권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함.

더불어, 본 사안이 저작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검토보고서상의 논리가

부족함.

- C 위원: 해당 안건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어떠신지?
- B 위원: 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작곡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판단이며,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 없음.
- C 위원: 해당 안건의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복제라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공정 이용 등 저작권 제한 사유가 인정되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음. 이에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전체위원회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A 위원: 본 위원도 B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해당 안건은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며 영리 목적으로 MR 음원을 판매하고 있어 가결 의 견이나, 공정 이용 측면에서 전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순번 1번에 대하여 2분의 심의위원님께서 가결의견을, 1분의 심의위원님께서 부결 의견을 주셨지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공정 이용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전체위원회로 회부함.
- 강나래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4 번은 2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총 6개 게시물임.

순번 2번~3번은 네이버 블로거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 ☆☆☆☆☆', '☆☆☆☆ ☆☆☆☆'을, 순번 4번은 네이버 TV 이용자가일본 드라마 '☆☆☆ ☆☆'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우리말 자막과 함께 각각 제공한 사안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37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분량이 24분 20초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수, 비고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2번~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순번 2번~4번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일본 애니메이 션, 드라마를 공중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요건에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4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번~18 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를 무료로 각각 제공한 사안임. 총 17개 게시물임. (순번 11번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50화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300원 대여, 500원에 구매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수, 비고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5번~1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순번 5번~18번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만화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18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선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9번~46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68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소프트웨어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출판 '권왕무적'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5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출판 '권왕무적'을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권왕무적'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권당 900원에 대여, 3,500원에 구매 가능함.

(방송 '윤스테이'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43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윤스테이'를 12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1. 2. 19.에 방영한 6화를 mp4 파일과 스트리밍 방식으로 각각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1. 8.부터 현재 7화까지 방영중이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화당 1,650원에 대여 가능함.

(게임 '그림 던(Grim Dawn)'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4 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그림 던(Grim Dawn)'을 55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제작사·배급사는 크레이트 엔터테인먼트이며, 2016. 2. 26.에 출시한 PC 게임임. 'STEAM' 사이트에서 27,000원에 구매 가능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 번 19번~46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C, A 위원: 순번 19번~465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9번~46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 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 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21574호(순번 1번)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건번호 제2021-21575호~22038호(순번 2번~46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 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 으로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17쪽부터 4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814호~1019호 206개 안건 중 20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06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3개 안건(43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 2021년 제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10.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